



국민권익위원회

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「청탁금지법 홍보 리플렛 배포 및 활용 협조(공직유관단체)」

1. 청렴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.
2.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(이하 청탁금지법) 제정에 따라 2016년 9월 법 시행에 대비하여 시행령 제정 및 법률 주요내용에 대한 홍보?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3.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주요내용을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리플렛을 제작·배포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>

부정청탁 금지	금품등 수수 금지	위반행위 신고 및 보호·보상
-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-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금지 -부정청탁 시 부정청탁 관련자 제재	-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(※ 공직자등의 배우자 포함) -금품등 수수 시 관련자 제재 -기준금액 초과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	-공공기관(또는 감독기관), 감사원·수사기관,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-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호장치 마련 -신고자에 대한 보상금·포상금 지급

※ 리플렛 : 중앙?지방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등 1,270여개 각급기관에 63,550부 발송

※ 청탁금지법 리플렛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(www.acrc.go.kr) >위원회자료 >부패방지 >청탁금지법 >설명?홍보자료 게시판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.

붙임 : 청탁금지법 홍보 리플렛 1부. 끝.

국민권익위원회



수신자** 공직유관단체

주무관

양정윤

서기관

황인선

청렴총괄과장

전결 06/24

허재우

협조자

시행 청렴총괄과-1611 (2015-06-24)

접수 20150625-005 (2015.06.25)

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-2동(국민권익위원회) / www.acrc.go.kr

전화 044-200-7707

전송 044-200-7939

/ yangjy81@acrc.go.kr

/ 비공개 (5)

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.